

의안번호	2213498
의 퇴 인	김승원의원
회 답 일	2026.2.20.
추계번호	25B5516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100만원(연평균 1,82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안 제6조)	91	-	-	-	-	91	18.2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리운전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리운전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기반 호출·배차 시스템 및 사고 대응 체계의 구축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7조 (우수사업자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대리운전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5항)	
3	안 제9조 (공제조합 설립 등)	대리운전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대리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4	안 제14조 (대리운전자의 교육 등)	대리운전자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제1항) 1. 대리운전서비스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대리운전서비스의 자세 및 대리운전서비스 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제1항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안 제6조제2항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	• (제3호)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기반 호출·배차 시스템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구축 범위와 기능,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7조 (우수사업자 인증)	—	• (미대상) 제정안은 우수사업자 인증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인증을 신청한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인증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인증수수료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재정지원은 불요하다는 입장임
3	안 제9조 (공제조합 설립 등)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설치할 공제조합의 수,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국토교통부가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준, 내용, 방법 및 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4조 (대리운전자의 교육 등)	×	• (제3호) 제정안은 대리운전자가 운전업무 종사 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지원이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방자치단체별 연수기관의 설립 여부, 교육기관 지정기관 여부, 교육방법, 지원단가 및 연차별 교육량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 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안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	•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용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하위 법령과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위탁기관별 업무 내용, 재정지원 여부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서비스업의 안정적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 이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유사사례의 평균 사업비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사업 첫 해에 1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할 경우 대리운전서비스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비용은 평균 9,100만원으로 추정됨

[표 2]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공고기관	사업비
2025	국가유산 정보서비스 콘텐츠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국가유산청	98
2023	그린카드 공공시설 할인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0
2023	채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재)노사발전재단	125
평균			91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91	-	-	-	-	91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계액은 변동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계액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여객운수종사자 교육과정 개요¹⁾

□ 교육목표

- 신규교육: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 직무역량 배양, 교통약자등 이용자 중심의 친절 교통문화 서비스 고취
- 보수교육: 업종별 전문 운수종사자로서 역할과 교통문화 서비스 향상,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으로 안전의식 함양, 보행자 중심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교육대상 : 법인·개인택시, 시내·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신규교육: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 후 2년 경과자 대상, 16시간
- 보수교육: 기존 운수종사자 대상, 연 1회 4시간 등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주 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H	수시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H	매년
	무사고·무벌점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무사고·무벌점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격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H	수시

자료: 경기도 교통연수원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²⁾,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1) 경기도 교통연수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2)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³⁾,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교육비용: 수강자 부담,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별 상이
 - 신규교육 : 3.5~4.5만원
 - 보수교육 : 무상~1만원
- 수강 방법: 지역별 교통연수원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3)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